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대가 산출 내역 작성기준 구체화(안 제32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제4항 신설로 발주청이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음
- 이에 발주청이 대가 산정방식별(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) 표준서식에 따라 대가 산출 내역서를 작성토록 하여 법률상 공개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작성기준 구체화

나. 개정 내용

- 발주청은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에 따라 대가 산출시,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대가 산출 내역의 작성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작성 편의 도모 및 입찰참가자 등의 예측가능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시기 및 방법 명시(안 제33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제4항 신설로 발주청이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음
- 이에 발주청의 대가 산출 내역의 구체적인 공개 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법률상 공개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구체화

나. 개정 내용

- 발주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시(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시), 대가 산출 내역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토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시기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발주청 업무 절차 표준화 및 입찰참가자 등의 예측가능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대가 산출 내역서 서식 마련(안 [별지 제1호 서식], [별지 제2호 서식])

가. 개정 이유

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제4항 신설로 발주청이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음
- 이에 발주청이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을 준수한 대가 산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대가 산정방식별(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) 표준서식 마련

나. 개정 내용

- 별지 제1호(실비정액가산방식) 및 별지 제2호(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)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대가 산정방식별 표준서식 마련으로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 부담 완화 및 세부항목의 누락·오류 발생 방지, 입찰참가자 등의 정보 확인 편의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